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11 선고 2022가단5136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

담당변호사 김민지

변 론 종 결 2022. 8. 1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전남 무안군 D 대 18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

2021. 11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

무안등기소 2021. 11. 16. 접수 제33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(피고의 남동생)은 2010. 6. 4. F 주식회사로부터 2,000,000원을 계약완료일(변제기간) 2012. 11. 4., 약정상환일 매월 4일, 변제횟수 29개월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48.545%(일 0.133%)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으나, 2011. 5월경부터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(위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F 주식회사는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2012. 1. 19. G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, 2012. 1. 20.경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.

다. G 주식회사는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2017. 9. 11. 원고에게 양도하고, 2017. 10. 10.경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.

라. E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. 11. 11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1. 11. 16.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2021. 11. 11.자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이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살피건대,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갑 제4, 8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E이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인 2011. 4. 5.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. 4. 10. G 주식회사가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명령 신청(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65527)을 하여 2012. 4. 16.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고 2012. 5. 12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,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. 11. 8.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명령 신청(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67106)을 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(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소291335)인 점을 알 수 있는바,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

살피건대,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. 11. 11.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. 11. 16.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,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증여계약이 E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6, 7호증, 을 제1 내지 6, 8,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, 즉 H(피고와 E의 모, 1933년생)는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, E의 채무로 인해 2012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3건의 가압류등기(채권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I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, 채권자 주식회사 J)가 마쳐진 사실, E은 2021. 9. 15.경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K은행, L카드 등 여러 곳에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, 원고 또는 F 주식회사(채권양도인) 또는 G 주식회사(채권양도인)에 대한 채무는 조회되지 않았던 사실, 1남 7녀

중 장녀인 피고는 노모 H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파악한 E의 채권자들에게 2021. 10. 27.경 합계 39,080,730원(주식회사 M에 600만 원, N에 15,060,090원,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,355,880원, O 주식회사에 260만 원,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,064,760원)을 E을 대신하여 변제하고, 그 무렵 위 3건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다음 2021. 11. 16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토지의 2021년 기준 공시가액은 4,126,800원(= 공시지가 22,800원 × 면적 181㎡)에 불과하여 피고가 E을 대신하여 변제한 합계 39,080,73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, 피고가 신용정보조회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 E의 다른 채권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는 위 처분행위가 E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춘화